

우리사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안내

(‘21.1. 우리사주지원센터)

I.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88조의4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제2항).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예탁 중인 우리사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제9항). 이에 따라 2021년 이전까지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조합계정 및 조합원계정 보유주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한 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일정금액 초과(연간 2천만원 초과)인 과세 대상자에 한해서는 상기의 비과세 혜택이 배제됩니다(법 제129조의2). 이는 고소득거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세법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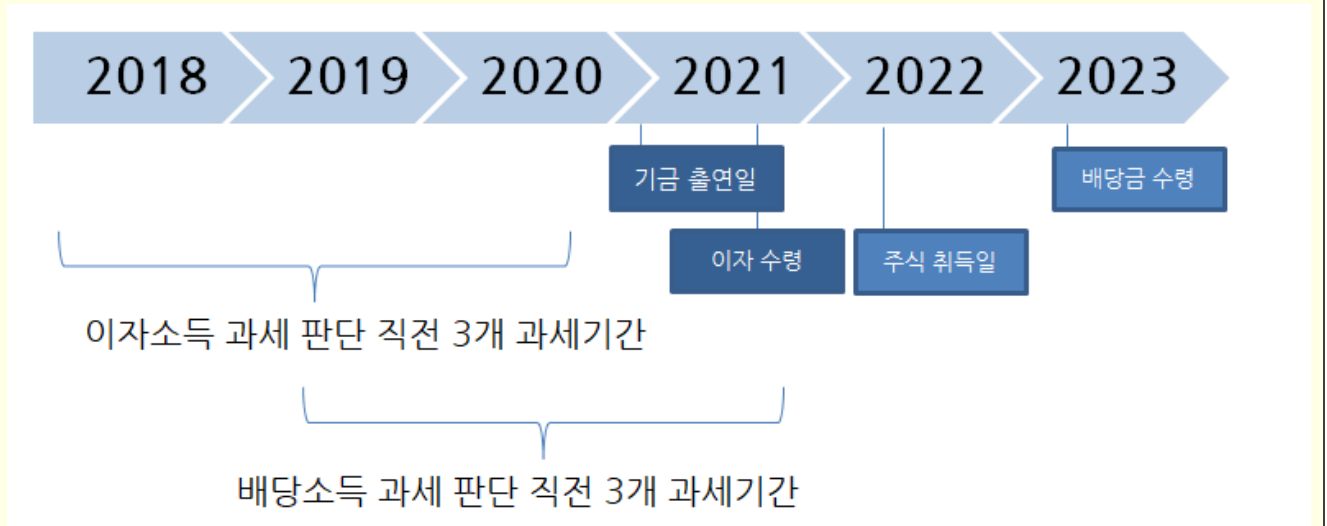
II.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한 (법 129의2)

법 제129조의2에서는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 대상자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 대상자가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한 날 또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제1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예를 들어 금액 기준(2천만 원 초과)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2%로 가정 시 ‘10억 원’ 초과액의 현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 기준으로 2021년에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하였고 2021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즉 2018년, 2019년, 2020년 중 1회라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사 례 -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의미〉

A사 우리사주조합원 B씨는 2021년 3월 1일에 조합기금을 출연하였고, 2021년 6월 30일에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 1일에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14일에 2022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배당을 받았습니다. B씨는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외의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B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금 출연일의 직전 3개 과세기간(2018년, 2019년, 2020년) 중 1회라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3년도에 B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 취득일이 속하는 2022년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2019년, 2020년, 2021년) 중 1회라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배제에 관한 설명의무와, 금융기관이 비과세 상품 가입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23조의2).

먼저 금융기관은 위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를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이 징수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항). 또한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은행연합회는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계좌보유자별로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와 같이 구축된 정보망을 통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조회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3항 내지 제8항).

Ⅲ.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징수·납부 절차 및 불이행시 제재 (법 146의2)

위의 법 제129조의2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이 법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징수)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주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제1항).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자에게 징수한 세액 및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제2항).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제3항).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7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징수)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부적격 판정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그러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의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제2항).

* 원천징수의무자 : 이자소득의 경우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보관 또는 예치하고 있는 금융회사, 배당소득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제1호), 계좌 해지를 위해서 자산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제2호),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제3호)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그로부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더 이상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징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Ⅳ. 조합원 이외의 자의 기부금 공제 혜택 계산방법 구체화 (법 88의4③)

2021년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기부금 관련 조문 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을 반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법 제88조의4제13항이 보완되었습니다. 개정 법에서는 기부금 공제 혜택 관련 계산방법이 구체화되었고, 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 계산 시 반영되는 이월공제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경비에 산입*

한도액=[A-(B+C)]*100분의 30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차감소득금액+기부금 지출)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아래의 2번 방식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2.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기부금을 공제하는 경우

한도액=(A-B)*100분의 30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거주자에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는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다시 말해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공제가능하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로만(위의 1번 방식) 산입합니다.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도액=[A-(B+C)]*100분의 30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기금을 출연한 거주자(조합원 제외)께서는 구체화된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 담당자께서는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적용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